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업고용인력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항만 운영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수산물과학조사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인력(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08. ~ 3.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4호 중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을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계획”을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관리 및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쓰레기 관련 국제협력

제7조제1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폐기물 배출 관련 모니터링
10.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관리·운영
11. 런던 협약·의정서의 운영
12. 폐기물 배출해역 및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소의 환경관리
1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14. 해양배출폐기물의 배출해역 지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 중 “제76호까지”를 “제73호까지, 제73호의2, 제74호부터 제7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수산부산물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

제9조제2항 중 “항만운영과 및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을 “항만운영과·항만안전보안과 및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비상사태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업무

6.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에 관한 업무

7. 부두 운영회사의 육성·지원

8.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관리

9. 항만노무인력 공급체계 개편

10.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자격 관리 업무

11. 해운항만물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⑧ 항만안전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하역장 안전관리 및 항만보안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

2. 항만안전 및 항만보안 관련 법령의 제·개정

3.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확산·정착에 관한 업무

4.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운영 및 지도·감독

5.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위험물 하역(선박연료공급업은 제외한
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시행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에 관한 업무
8. 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9. 항만보안 인력의 운용에 관한 업무
10. 항만보안 교육훈련제도 개발 및 보안교육기관 지정·운영
11. 항만보안 시설·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12. 항만시설 보안료에 관한 업무
13. 항만시설 보안평가, 보안심사에 관한 업무

제11장의2(제4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4조의3(평가대상 조직) 해양수산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와 같다.

제46조제9항을 삭제한다.

별표 16 중 총계 “593”을 “595”로 하고, 일반직 계 “589”를 “591”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6”을 “208”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600”을 “602”로 하고, 일반직 계 “596”을 “598”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

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98”을 “200”으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55”를 각각 “1,25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2”를 “343”으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59”를 각각 “1,26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7”을 “358”로 한다.

별표 2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26”을 각각 “62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19”를 “622”로 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의 제6호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4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중 “사항은 해양환경정책과장”을 “사항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는 해양보전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9항, 별표 3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4조의3 관련)

조 직	정 원	평가기간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1명 (4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⑤ (생략)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정책실에 해양정책과·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해양개발과·해양레저관광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해양환경정책과·해양공간정책과·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기후환경국제전략팀·국제협력총괄과·해양영토과 및 통상무역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⑥ ----- ----- ----- ----- ----- ----- -----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 -----. ----- ----- -----.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 -----.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기관 및 책임기관의 지정·운	4. -----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u>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계획</u> 의 수립 및 시행	6. <u>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 획</u> -----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13. <u>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관리 및 감독</u>	13. ----- <u>지도</u> · 감독
⑫ · ⑬ (생 략)	⑫ · ⑬ (현행과 같음)
⑭ 해양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해양쓰레기 배출 관련 모니 터링 및 국제협력</u>	3. <u>해양쓰레기 관련 국제협력</u>
4. <u>폐기물 해양투기제도 관리 · 운영</u>	<삭 제>
5. <u>런던 협약 · 의정서의 운영</u>	<삭 제>
6. <u>폐기물 배출해역 및 이산화 탄소 해양지중저장소의 환경 관리</u>	<삭 제>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17. <u>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u>	<삭 제>
18. <u>해양배출폐기물의 배출해역 지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u>	<삭 제>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16>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은	-----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⑰ ~ ⑲ (생략)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④ (생략)

⑤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3호부터 제69호까지, 제69호의2, 제70호부터 제76호까지, 제76호의2, 제76호의3 및 제77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⑰ (생략)

<18>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

-----.

1. ~ 8. (현행과 같음)

9. 해양폐기물 배출 관련 모니터링

10.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관리·운영

11. 런던 협약·의정서의 운영

12. 폐기물 배출해역 및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소의 환경관리

1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14. 해양배출폐기물의 배출해역 지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⑰ ~ ⑲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73호까지, 제73호의2, 제74호부터 제76호까지-----

-----.

⑥ ~ ⑰ (현행과 같음)

항을 분장한다.

1. ~ 29. (생략)

<신설>

①⑨ (생략)

제9조(해운물류국) ① (생략)

② 해운물류국에 해운정책과 · 연안해운과 · 선원정책과 · 항만물류기획과 · 항만운영과 및 스마트해운물류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⑦ 항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생략)

6. 항만의 보안 · 경비 및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등 위기

-----.

1. ~ 29. (현행과 같음)

30. 수산부산물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

①⑨ (현행과 같음)

제9조(해운물류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운정책과 · 연안해운과 · 선원정책과 · 항만물류기획과 · 항만운영과 · 항만안전보안-----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4. (현행과 같음)

8. (현행 제5호와 같음)

6. 항만운송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에

<u>관리에 관한 업무</u> 7. (생략) 8. <u>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관한 업무</u> 9. (생략) 10. (생략) 11. <u>첨단 항만물류시스템 개발</u> 12. <u>항만물류정보화 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u> 13. <u>검수사·검량사·감정사 수급에 관한 업무</u> 14. <u>해운물류 정보화사업에 관한 업무</u> 15. (생략) <u><신설></u>	<u>관한 업무</u> 7. (현행과 같음) <u><삭제></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9.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u>검수사·검량사·감정사 자격 관리 업무</u> <u><삭제></u> 13. <u>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2. <u>해운항만물류</u> ----- -- 5. (현행 제15호와 같음) ⑧ <u>항만안전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항만하역장 안전관리 및 항만보안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u> 2. <u>항만안전 및 항만보안 관련 법령의 제·개정</u> 3. <u>항만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확산·정착에 관한 업무</u> 4. <u>항만안전점검관 제도 운영</u>
---	--

⑧ (생략)
<신설>

- 및 지도·감독
5.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위험물 하역(선박연료공급업
은 제외한다) 안전관리에 관
한 업무
6.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시행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에 관한 업무
8. 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
무
9. 항만보안 인력의 운용에 관
한 업무
10. 항만보안 교육훈련제도 개
발 및 보안교육기관 지정·운
영
11. 항만보안 시설·장비의 설
치·운영에 관한 업무
12. 항만시설 보안료에 관한 업
무
13. 항만시설 보안평가, 보안심
사에 관한 업무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1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u><신 설></u> 제46조(한시정원) ① ~ ④ (생략) ⑤ ~ ⑧ 삭제 ⑨ 수산물·수산식품 영양정보 구축과 식품영양정보 통합·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5급 또는 연구관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⑩ ~ ⑳ (생략) 해양수산부령 제64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생략)	제44조의3(평가대상 조직) 해양수산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와 같다. 제46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⑩ ~ ⑳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64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이 분장 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 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 부터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u>사항은 해양환경정책 과장이 분장한다.</u>	음) ② ----- ----- ----- ----- ----- ----- ----- <u>사항 중 제1호부터 제8 호까지의 사항은 해양환경정책 과장이,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는 해양보전과장---</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593</u>	<u>595</u>	+2
	.		.	.	
	.		.	.	
일반직 계			<u>589</u>	<u>591</u>	+2
	.		.	.	
	.		.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 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206</u>	<u>208</u>	+2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00</u>	• <u>602</u>	+2
일반직 계	• • <u>596</u>	• • <u>598</u>	+2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 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소	• <u>198</u>	• <u>200</u>	+2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255</u>	• <u>1,256</u>	+1
일반직 계	<u>1,255</u>	<u>1,256</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 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 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 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42</u>	<u>343</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259</u>	• <u>1,260</u>	+1
일반직 계	<u>1,259</u>	<u>1,260</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 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 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 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57</u>	<u>358</u>	+1
•	•	•	
•	•	•	

[별표 27]

국립수산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26</u>		<u>629</u>	+3	
일반직	계		<u>626</u>		<u>629</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9</u>		<u>622</u>	+3	